



# 그 法 알

## 30대 女 모텔 끌고간 70대 男... 반전의 반전, 그날 무슨일이

[그 法 알 사건번호 88 “내가 감독인데...  
안 건드릴게” 뒤 모텔, 결국 재판 갔다]

피고인 이모(70)씨는 지난 2019년 한 채팅  
어플을 통해 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 
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.

이씨는 “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  
이 있다.”며 “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  
기는 너무 춥다.”고 운을 뗐습니다. 그러면서  
“감독인 나를 믿어라, 나 그런 사람 아니다.  
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  
자.”고 타일렀죠.



같은 날 오후 7시쯤 모텔에서 이씨는 생활  
비에 보태쓰라며 일방적으로 50만원을 줬습

니다. 피해자는 “집에 가고 싶다.”고 저항했지  
만 강제추행이 일어났죠. 그래서 이씨는 강제  
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재판에서 이씨 측은 ‘만진 사실’은 인정했지  
만, 일관되게 ‘강제성’은 부인했습니다. 이씨  
혐의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  
술이 유일했는데 이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의  
시각이 심급별로 엇갈렸습니다.

판결문을 종합하면 사건 뒤 피해자는 스스  
로 목숨을 끊을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성  
폭력 상담소 직원에게 남긴 후 전화기마저 끈  
채 산 속으로 잠적했는데요. 경찰이 그를 발견  
할 당시 번개탄과 소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  
다. 피해자는 IQ가 72 정도의 저조한 지적 능  
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.

반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로 따  
라 들어간 점, 모텔을 나서기 전 이씨 얼굴에  
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줬던 점이 ‘강제추행을  
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궁하기 어려운  
측면’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 피해자  
가 진술한 이씨의 체형과 항소심에서 신체 검  
증한 이씨의 몸이 달랐다는 점도 언급됐죠.

## 여기서 질문

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,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까요?

## 법원 판단은

1심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이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,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. 1심은 피해자가 이씨의 추행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나 말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.

반면 2심에서 이씨는 무죄로 기사회생했습니다. ① IQ가 72긴 하지만, 언어이해능력이나 지각추론 능력이 특별히 저조하지 않다 ② 이씨 신체에 대한 서술이 실제와 다른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반복됐다 ③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④ 이씨는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씨가 답을 하지 않자 화가나 고소에 이르렀다고 하는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역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

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.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?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배척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.



우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낮고 스스로를 “가난하다.”고 표현하고 특히 이 사건 무렵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사회·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왔습니다.

그래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40살의 나이 차이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상황에 비춰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것입니다.

또 그가 고소에 이른 이유에 대해 ▶‘돈도 많고 TV에도 나온 사람이라 내가 당한 일을 말해도 경찰에 돈 써서 풀려날 것 같다.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돈을 받았으니 꽃뱀 취급을 할 것 같다’는 취지로 말한 점 ▶다음날 아침 친구가 신고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이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. 반면 원심에서처럼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논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.

(저작권자/중앙일보)